



가정통신문

(2025 -32호)

담당부서

보건

발송일자

2025.05.08.

제 목 명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변경사항 안내 (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2021년 개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교무실 등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며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과 외용약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일반의약품 : 감기약, 해열진통제, 두통약, 소화제, 알러지약, 지사제, 항생제연고, 파스 등
- ◆ 의약외품 : 외용 소독제, 붕대, 거즈, 밴드, 가글, 마스크, 생리대, 안대 등

- ①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 안내 후 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 지급(주의 사항 안내)**
- ②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체육활동 등) 시 학생의 상비약 (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은 **개별로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 ③ 보건교사가 부재(출장, 연수 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④ 다만, 보건교사 부재 시 복용약을 제외한 일부 외용약(밴드, 거즈 및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연고, 소독제, 파스류 등)에 대하여는 학부모님의 사전 동의를 얻어 기준과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아래 동의서에 표기하여 학생 편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 05. 08.

섬진중학교장



자르는 선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내 일부 외용약 사용에 대한 동의서

학번	학생 이름	보호자 성함(서명/인)	동의서(해당란에 ○표)	
			동의	비동의
		(서명/인)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내 일부 외용약 사용 여부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5. 05. 08.

섬진중학교장 귀하

다함께 놀기롭게 기운차게